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0. Vol. 5 No. 2. pp. 59-83

이혼제도와 실태

이 종 한 · 이 윤 희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이혼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률적 조항과 그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혼에 관한 실태를 통계적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앞서 오늘날의 이혼실태의 현주소를 밝히기 위해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시대의 이혼제도와 실상에 대해 요약하였다. 현행 이혼에 관한 법률은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여 이혼에 있어서 여자의 입장을 과거의 법률에 비하여많이 강화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에 비하여 부인의 입장이 더 어려운 몇 가지 사항들이 잔존한다. 특히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혼 후의 재적응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최근 20여년의 통계는 이혼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1998년에는 이혼율이 32.1%이어서 한해 혼인한 쌍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부부가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히 결혼생활을 오래 한 고연령층과 고학력층에 이르기까지 이혼이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에 관한 자료를 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혼율의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역공동체심리학적 접근으로 이혼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이혼"이라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사회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로서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보편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199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그 해의 결혼수와 이혼수를 비교한 이혼율이 32.1%에 달했고, 최근 사회의 논란이 된 "황혼이혼(조선일보, 1999. 7. 1; 1999. 7. 19; 1999. 8. 25)"의 예가 보여주듯이, 이제 이혼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과 연령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로 취급되고 있다.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 힘든 부부에게는 이혼이 부득이한 해결책이라고는 하지만, 이혼은 이혼을 하는 남편과 아내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의 양육문제와 이 자녀들이 겪게 되는 괴로움 등 수 많은 문제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문제

로 부각되는 이혼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혼의 실태를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이혼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이혼에 관한 이러한 법률적 제도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이혼의 심각한 실태를 심리학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심리학자들이 이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실제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글의 부차적인 목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이혼의 의미와 법률적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조상들의 이혼에 관한 제도와 실상을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이혼에 관한 법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법(1990년. 1. 13 개정, 1991, 1. 1 시행)을 그 이전의 법률과 대비하여 제시하였으며, 현행 이혼에 관한 법률 및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혼의 실태는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약 30년간의 이혼율의 변화추이와 이혼의 원인 등 이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혼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논의를 간단하게 시도하였다.

이혼의 정의와 관련 법률 용어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으로는 부부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이 있으나, 앞의 두 가지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인데 반하여,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소멸 원인인 점에서 구별된다(엄영진, 1998). 이혼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하는 제도이다(이경희, 1997). 이혼에 관해서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몇 가지 술어로 나누어서 사용하므로, 이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협의상 이혼: 혼인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던 중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서로 협의하여 헤어질 것을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담당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이혼을 합의이혼 또는 협의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 데에 반해 상대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다시 구별할 수 있다.

조정이혼이라 함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訴)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은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정전치주의 제도는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협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을 구하려고 할 때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가사심판법 제 11조 1항). 조정단계에서 조정위원과 가사심판관은 부부간의 협의에 관한 합의를 성립시키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소송이혼이라 함은

①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②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③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등을 말한다.

소송에 의해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은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사실의 인정(認定)과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을 위해 사회정의를 고려하고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한다(가사심판법 제 27조). 이 판결은 선고(宣告)로 그 효력이

생기지만, 이 판결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http://www.lawok.net/ehglbrss5-6idj.htm; 가정법원, 2000).

역사 속의 이혼

우리나라에 있어서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이혼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으며 몇 가지 사례만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이혼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유교사상에 근거한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와 의절(義絶)같은 것이 있었으나 근대적 의미의 이혼은 없었고 남편(夫)측의 일방적인 기처제도((棄妻制度)가 있었다. 오늘날의 재판에 의한 이혼과 합의이혼은 일제시대 이후에 제도화되었다(김주수 · 이희배, 1981).

삼국시대의 이혼제도와 실상

삼국시대의 이혼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이혼에 관한 당시의 관습과 규제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추측해 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이혼의 법제라고 할 만한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중국과 같은 혼인풍속이 행해졌으므로 이혼에 대해서도 유교적인 생각이 전해졌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다처제(多妻制)로 인해 기처(棄妻)의 필요성이 별로 없었으므로 기처제에 관한 법제가 확립되지 않았다. 특히 왕실과 상류사회에서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가 행해졌으며, 이로 인해 부부의 결합이 견고하지 않았다. 남녀의 성규범이 이중적이었으므로 남성의 부정은 용납되었으나 여성에게는 비난의 대상이며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강력한 부권의 확립으로 부녀의 지위가 예속적이었기 때문에 남자 전권(專權)의 무인이혼(無因離婚)이 행해졌으리라 추정된다(이옥임 · 이옥주, 1988). 간통과 기타 악질의 범죄행위를 한 처와는 남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혼이 가능했다(김두헌, 1969). 北史 제94권 백제전에 의하면 백제의 풍속에 부인범간자입부가위비(婦人犯姦者 入夫家僞婢)가 있었는데, 이 말은 부인이 간통을 범하면 남편집안의 노비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범간(犯姦)으로 인해 정처(正妻)의 지위가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조차 있었다(김정옥 등, 2000).

통일신라 시대에 3건의 이혼사실이 전해진다. 첫째, 신문왕비 김씨의 이혼이다. 신문왕(31대)이 태자로 있을 때, 소판(蘇判) 김흠돌(金欽突)의 딸 김씨는 태자의 비(妃)가 되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했고, 후에 그녀의 아버지인 김흠돌이 난(亂)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이유로 궁에서 쫓겨났다(삼국사기 권8 신문왕 즉위조). 김씨의 이혼사유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라기보다 그녀의 아버지인 김흠돌의 반역때문이었으리라 추측된다. 둘째, 성덕왕의 비(妃) 성정왕후의 이혼이다. 이혼사유는 분명치 않으나 성덕왕은 성정왕후를 내보내면서 채단(綵緞) 5백필, 전지(田地) 2백결, 조곡(租穀) 1만석 그리고 집 한 채를 주었다고 전해진다(삼국사기 권8, 성덕왕 15년조). 셋째, 성덕왕의 셋째 아들 경덕왕선세기기(景德王先世紀己) 삼모부인(三毛夫人)의 이혼을 들 수 있다. 왕실의 이혼은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경우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처럼 쉽게 이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왕실과는 달리, 일반인에게는 어떤 이혼 형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강지처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리라 추측된다. 부부대륜(夫婦大倫)의 예교(禮敎)가 존중되어 삼국시대에는 함부로 조강지처를 버려선 안 된다는 도덕관념이 쉽게 처를 버리는 것을 제한하여 오기도 하였다(이광규, 1977).

삼국시대의 강수(强首)라는 사람의 혼인설화는 당시 일반인에게 자유혼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자유혼으로 선택한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는 의부(義夫)의 도덕을 보여주었다. 강수는 대장간집 딸과 사귀어 정이 두터워졌는데, 그의 부모는 그가 20세가 되자 읍내의 용모가 아름답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을 골라 며느리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강수는 두 번 아내를 얻지 않겠다고 거절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옛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처를 버리지 않는 것은 비록 빈천한 사귐이지만, 이 사귐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부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삼국사기 권46 열전 제6 强首條: 이광규, 1977).

이 밖의 이혼의 사례는 전하는 것이 없으나 이 시대에는 ① 여자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었으며, ② 계급의 차이가 있는 혼인관계, 정실이 아닌 혼인관계는 주변의 압력 등으로 해소되기가 더욱 쉬우며, ③ 친정가족이 죄를 저지른 경우, ④ 대를 잇지 못할 경우에 흔히 혼인이 해소되었다(김정옥, 2000).

고려시대의 이혼제도와 실상

고려조에서는 이혼에 관한 규범이 삼국시대보다 조금 더 명확히 정해져 있었으며, 남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강제이혼이 때때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사실은 왕실의 폐위사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려왕실의 이혼으로는 인종의 폐위사건이 있다. 폐비 이씨 두 사람은 모두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로서 이자겸의 몰락과 더불어 폐비되었다(고려사 88 열전 권1 후비1 인종폐비 이씨조). 신라 신문왕비 김씨와 고려 인종의 이씨의 폐비 사건을 통해 왕실의 이혼은 일반과 다른 특수한 정치적 사정에 의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과 귀족사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혼이 된 예가 있다고 하나 예교(禮敎)가 존중되어 확실한 근거 없이 처와 이혼하거나 처가 개가하는 것을 금하였다고 한다(이옥임 · 이옥주, 1988).

고려 귀족의 이혼의 예로는 수비(壽妃) 권씨를 들 수 있다. 권씨는 복주인(福州人)으로 좌상시(左常侍) 형(衡)의 딸이다. 권씨는 처음 밀직상의(密直商議) 전신(全信)의 아들에게 출가하였으나 그녀의 아버지인 형(衡)이 전씨 가문을 싫어하여 딸을 이혼시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충숙왕(忠肅王) 즉위 4년에 형(衡)은 내지(內旨)에게 부탁하여 딸을 절혼(絶婚)시키고 왕에게 납(納)하여, 딸을 수비(壽妃)로 책봉시키는 데 성공했다(고려사89 권2 후비2 충숙왕 수비조). 이 이야기는 수비 권씨가 초가(初家)와 이혼한 후 왕과 재혼한 특수한 경우이지만, 이를 통해 당시 귀족 또는 양반 사이의 이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광규, 1977).

고려형률(高麗刑律) 중 호혼률(戶婚律) 4개조의 이혼에 관한 것을 보면, ① 간통한 처는 강제 이혼할 수 있고, ② 부모의 승낙 없이 처를 버린 자는 관리로서의 직업정지처분을 당하며, ③ 남편을 버리고 나간 여자는 형벌을 가하되 정처인 경우에는 첩보다 중하게 취급한다는 3가지 항목이 있었다(정광현, 1967).

고려의 법률은 음행한 처에 대해 강제이혼을 하도록 했으며, 음행한 처는 음녀안(淫女案)에 기록하고 침공(針工)에 속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여자의 부정이 첫째 이혼사유였음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부모와 의논하지 않고 이유 없이 처를 버린 자는 정직(停職)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처를 버린 사실보다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은 불효에 대한 제재로서 형사벌이 아닌 행정벌을 받게 하였다. 처가 함부로 남편을 떠나 도망하는 자는 도형(徒刑) 2년에 처하고, 도망하여 개가하는 자는 2천리의 유형(流刑)에 처하며, 첩이 도망했을 때는 도형(徒刑) 1년 반을, 도망하여 개가하면 도형 2년 반에 처했다고 한다. 여자가 도망한 사람인 줄 알면서 그 여자를 취한 자는 여자와 동죄(同罪)로 처벌했고, 유부녀인 줄 몰랐으면 무죄로 다스렸다(고려사 권84지 권38 형법1 호혼조, 이광규, 1977).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남자가 이유 없이 기처(棄妻)하여도 부모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하등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자유혼이 성행하였고, 처첩간의 별다른 차별이 없었으며, 기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의 폐비도 쉽게 이루어졌으며, 귀족들간이나 서민계급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기처한 예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이혼에 대한 남자들의 일방적인 재량권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이혼제도와 실상

이조시대에는 고려 말(末) 이래로 융성해진 유교적인 예교의 보급에 따라, 관혼상제의 예(禮)가 정비되어, 이혼제도도 태조이래 중국의 대명률(大明律)의 칠출삼불법(七出三不法)의 율(律)이 이혼제도의 지배원리였다. 七出(七去之惡)은 일곱 가지 기처(棄妻)의 원인이었다. 일정한 사유(法的 原因: 七去事由)가 있을 때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반면, 아무리 법정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사유(離婚原因阻却事由: 三不去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유 없이 기처(棄妻)한 자는 처벌하였다.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법정 이혼 원인은 대명률에 규정된 칠거(七去: 七出)였으며, 이혼을 제지하는 제도로서는 삼불거(三不去)가 있었다.

가녀칠거(嫁女七去)는 ① 불사구고(不事舅姑):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불효, ② 무자(無子): 아들을 낳지 못하여 가계계승 불가능, ③음질(陰疾):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혈통의 순결과 남성의 독점욕 침해, ④ 질투(嫉妬): 질투를 하여 축첩제도를 방해, ⑤ 악질(惡疾): 나병 등의 질병이 있어 자손번영에 유해, ⑥ 다언(多言): 말이 많아서 가족 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 ⑦ 절도(竊盜): 도둑질을 했을 때를 말한다. 이 중 다언과 절도에 관해서는 이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절도만이 범죄행위로서 당사자의 유책사유(有責事由)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여섯 가지의 사유는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었다(정광현, 1967). 칠거제도를 통해, 남편은 아내를 한 개인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가(家)를 위해 맞이하였으며, 아내는 자식을 낳아 가계를 계승하고,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 한 개인으로서의 존중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내가 가족을 위해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이 당시의 미덕이었으므로 이혼제도 역시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남녀 불평등한 것이었다.

칠거(七去)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지라도 이혼을 금하는 삼불거(三不去)의 원칙이 있었다. 삼불거[1]는 ① 처가 이혼 당한 후 복귀할 집이 없는 경우, ② 시부모를 위해 삼년상을 지낸 경우, ③ 결혼 당시 빈천하다가 후에 부귀하게 된 경우이다.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혼을 금지시켰던 사례가 이조실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처가 간음했을 때, 혹은 악질(유전병)이 있을 때는 의절(義絶: 강제이혼)의 원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삼불거에 무관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정광현, 1967).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의 예교를 이혼의 지배원리로 삼은 것은 기처를 합리화시키려는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일면도 있지만, 무인이혼(無因離婚)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법정사유 외에도 이혼의 사유로서 역가이혼(逆家離婚)과 의절이혼(義絶離婚)이 있었다. 역가이혼(逆家離婚)은 처족(妻族)이 반역죄에 처하였을 때 그 죄화(罪禍)가 부족(夫族)에게 미칠 것이 두려워 처를 이혼시킨 제도이다. 그리고 의절이혼(義絶離婚)은 혼인관계 내에서 일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국가가 이혼을 강제하는 제도였다(장병인, 1999).

칠출삼불거의 원칙은 주로 사대부에 관한 규범이었고 사회상층의 예속(禮俗)이었으나, 사회하층의 일반 서민의 이혼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일반서민의 이혼요건이 사대부보다 간단했으리라 추측된다. 하층사회에서 행해지는 습속으로 사정파의 또는 할급휴서가 있었다. 사정파의란 부득이한 사유로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다. 할급휴서란 문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윗적삼의 옷고름 한 조각를 잘라서 이혼 증명서 격으로 주었다. 이러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사회관습상 이혼은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하여 부부간에 불화가 있으면 기처의 속(俗)이었던 소박으로 그치고 처와의 혼인관계를 계속하였다(이광규, 1975). 소박은 형식상 부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혼과 같으면서 사회적 체면때문에 이혼의 형식을 취하지 못한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소박하는 것이 외소박(外疏薄)이고, 아내가 남편을 소박하는 것이 내소박(內疏薄)이었다. 대체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봉건적 사회풍토에서는 남자에 의해 여자가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외소박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형태의 풍속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개가, 재혼을 사회적으로 죄악시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이혼의 형식요건으로 보아 일반인에게는 이혼이 사대부보다 용이하였으며 이혼건수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사회상층에서 정립한 이혼 제지적(制止的) 사려와 남자 일방

1) 대재예기 권13본령 제80의 婦有三不去有所취無所歸不去與共更三年喪不去 先貧賤後富貴不去

의 이혼전권(離婚專權)이 시간과 더불어 사회하층에 파급되어 적어도 조선조 후기에는 이것들이 일반적 통념으로 굳어졌을 것이다.

조선조 말기에는 칠거삼불거(七去三不去)의 이혼법이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로 되었다. 칠거 중 무자(無子)와 질투의 이혼사유는 문제된 바가 없으므로 광무9년(1905년) 형법대전 제정시에 이를 제외시켜 오출(五出)로 정하고(형법대전 제578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첨가하여 사불거(四不去)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은 강희2년(1908) 형법대전 대개정으로 폐지되었다(김정옥 등, 2000).

조선시대는 이혼할 수 있는 규정과 이혼할 수 없는 규정이 모두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혼이 억제되고 있었다(한남제, 1999). 그런데 이러한 법정 이혼원인과 제한사유는 남편 또는 남편의 가족측에서 정한 법규이며, 처 내지 처가에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남녀평등한 사유는 아니었다. 당시 이혼이라는 말 대신 기처(棄妻)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이미 버린 처' 또는 '처를 버리다'는 의미로서 처와의 관계가 파기된 상태를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었다. 기처(棄妻) 또는 출처(出妻)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내쫓는다는 의미의 용어가 많았던 것은 부부합의에 의한 이혼보다는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이혼이 주류를 이루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장병인, 1999). 이와 같이 한국 전통부권사회에서의 이혼은 오직 남편만의 전권이혼이 행해졌다고 본다.

일제시대의 이혼제도와 실상

재판상 이혼제도의 확립은 일제가 침략한 후의 일이다. 일제초기인 1923년 7월 1일까지는 구관습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표면상 관습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일본의 구민법의 이혼규정에 준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구민법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요청에 맞추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남녀불평등한 것이었다(엄영진, 1998). 그 후 1923년 7월 1일부터 일본의 구민법(舊民法)이 우리나라에 의용(依用)됨으로써 재판상 이혼원인이 확정되었다(구민법 813조 1호-9호). 일제는 1923년 7월 1일부터 협의이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법적 지위가 상승되어 여성에게도 이혼권이 인정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협의이혼이란 명목으로 남편의 전권적(專權的)인 이혼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었다(유영주, 1985).

구민법의 구체적인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배우자가 중혼을 한 때, ② 처가 간통을 한 때, ③ 부(夫)가 간음죄로 인하여 형에 처하여진 때, ④ 배우자가 처형된 때, ⑤ 배우자로부터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 ⑥ 배우자로부터 악의의 유기(遺棄)를 당한 때, ⑦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 ⑧ 배우자가 자기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를 하거나 또는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⑨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러한 이혼규정은 봉건적 가족제도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매우 남녀불평등한 것이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한 이혼사유에 있어서 아내가 간통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제2조항), 남편이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정명, 1995). 단지 남편이 간음죄로 형에 처해졌을 때에만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다(제3조항). 뿐만 아니라 축첩상태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구민법의 이혼원인은 배우자의 일방이 혼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적(有責主義的)인 규정이며, 특히 법률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는 이혼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제한열거주의적(制限列擧主義的)인 이혼규정이었다(엄영진, 1998).

현행 우리나라의 이혼제도 및 문제점

이혼에 관한 법률

일제하에 사용되던 일본 민법전에 대체하여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정한 새로운 민법이 1958년 2월22일 공포되었다. 민법전의 제4편 친족편의 제3장에는 혼인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장의 5절에 이혼에 관한 법조항들이 수록되었다. 당시의 법은 남성우위

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법이 남자들에게 유리했다. 이 법은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불만을 초래했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여러 차례의 논의와 의견수렴으로 이혼에 관한 법률이 1990년 1월 13일에 개정되었고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이혼에 관한 법률인 민법 제834조에서 제843조(1990. 1. 13 개정, 1991. 1. 시행)까지의 내용과 이전의 법률(1958. 2. 22 공포)을 대비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세계적인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1958년 민법을 제정할 때에 구민법(舊民法)상의 유책주의적이며, 제한열거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파탄주의(破綻主義) 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무책적(無責的) 원인이라 할지라도 혼인을 파괴하는 사실은 모두 이혼사유로서 인정하는 경향이 생겨나, 구체적인 이혼원인을 열거하기보다는 추상적이며 개념적인 이혼사유를 고려하게 되었다. 즉 가정파탄의 전형적인 실례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와 같은 5개의 독립된 예시사유 이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인정하도록 하였다(김주수 · 이희배, 1981). 배우자에게 어떤 사유나 결점이 없더라도 조정의 가망이 없을 때, 이혼을 허용하는 무결점 이혼법(no-fault divorce)은 이혼율을 과거

표 1. 이혼에 관한 현행 법률과 이전 법률의 비교

	현 행 이 혼 제 도	1958년 제정 이혼제도
제834 조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 조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 재80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에 의를 준용한다 (1990. 1. 13 전문개정). *제808조(동의를 요하는 혼인)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77. 12. 31 전문개정).	(무능력자의 협의상 이혼) 1.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2.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1.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77. 12. 31 개정) 2.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1.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전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連署)한 서면(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표 1 > 계속

	현 행 이 혼 제 도	1958년 제정 이혼제도
제837조	(이혼과 子의 양육책임) 1. 당사자는 그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90. 1. 13 개정). 2. 제 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90. 1. 13 개정). 3. 제 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과 子의 양육책임) 1. 당사자간에 그 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父에게 있다. 2. 전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제837조의 2	(면접 교섭권) 1. 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2. 가정법원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1990. 1. 13 본안신설).	
제839조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23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제823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할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1.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1990. 1. 13 본안신설).	

<표 1 > 계속

	현 행 이 혼 제 도	1958년 제정 이혼제도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990. 1. 13 개정)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	(기타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타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 2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1990. 1. 13 개정).	(준용규준) 제806조, 제837조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89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1.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訴)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표출처 : 한국법제연구원(1994). 대한민국법률연혁집.

보다 높이는 법적 장치가 되었다(이정덕 등, 1998).

재판상 이혼 청구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행 민법 840조의 법률적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중 1호-5호가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이혼사유인 반면, 6호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이혼사유라 할 수 있다.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부부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파탄이 원인이 된다.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는 아내의 문란행위, 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사치, 불성실, 거액의 도박을 했을 경우이다. 둘째, 윤리적 정신적 파탄이 원인이 된다.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모욕 또는 가해 등이다. 셋째, 육체적 파탄의 원인으로서 이유 없는 성관계의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부당한 피임 등이 해당된다(이영숙 · 박경란 · 전귀연, 1999).

사실상 제1호-5호의 사유는 제6호의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전형적인 실례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현대의 이혼제도는 어느 한쪽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이유로든 쉽게 헤어질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도 이혼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

재산분할청구권

법정 재산제에 관한 조항이 있는 민법 제830조에는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하고,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확정한다
는 2 가지 조항이 있다.

현행 법정 재산제는 별산제로서 부부 각자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법제이다. 대개의 재산은 경제활동을 하는 夫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조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라도 명의자인 夫의 특유재산이 되고, 판례가 처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이다(이근식, 1985). 따라서 담당판사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재산청구권의 의의가 달라진다. 판례는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판시할 수 있는 해석상의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으로 해석하여 재산취득에 있어서의 여성의 기여를 외면해 오기도 하였다. 처의 기여는 현실적으로(대부분의 재산이 부의 명의로 취득됨), 법적으로(명의자를 소유권자로 봄), 판례(가사노동을 기여로 인정하지 않음)에 의해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혼인 중 취득재산에 있어서 가사노동의 기여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하고 제830조를 완화 해석하여 부부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이화숙, 1990).

부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신설되었지만 별산제로 인해 이혼 후 재산 양도시 세금추정의 문제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생존기간 중에 배우자 일방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된다(정무장관(2실), 1993). 현재의 부부별산제 하에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세의 과세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세법을 개정하여 이혼시 분할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변화순, 1996).

현존하는 이혼급부제도로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과 이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데, 재산형성에 기여했지만 현재 분할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조차 없으므로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처해진 일방은 더욱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구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재산권(new property)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재산권이란, 연금, 경력, 교육과 같이 현재로서는 화폐로 계산될 수 없지만 장차 형성될 잠정적인 재산을 말하며, 새로운 재산권제도란, 자격증 취득에 있어 일정기간의 수련을 요하는 직업, 즉 이혼시 재산으로서의 평가는 낮지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연금수혜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수혜 등이 현재 획득한 자산들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잠정적 재산, 혹은 보상급부에 상당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배우자 일방이 퇴직금, 연금, 수당을 받을 개연성이나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기여한 무형의 재산에 대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변화순, 1996).

주거의 문제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보장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주택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일방의 소유라면 판사는 다른 일방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 법원은 현재의 거주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점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을 확대 실시하거나, 영구임대주택의 비율을 점차 증진시켜 이혼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이익에 대한 기준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변화순, 1996).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한국의 이혼관련법이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자녀 복지의 기준이 부모 위주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혼은 이혼 당사자만의 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적극 개입하여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결정을 이혼절차에 포함시켜 자녀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해결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내용이 자녀의 이익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혼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자녀가 자신의 요구 및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주고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연령에 달한 경우에도 자녀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자를 결정할 때 경제적 능력을 중요한 조건으로 세우고 있으나, 심리 정서적 요인이 이혼가족 아동의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친권자 결정시 부모 자녀간의 애착관계와 상호작용의 질,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의사 등 정서적 복지와 관련된 요인을 한층 더 배려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정문자 · 김은영, 1999).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도 아버지와 동등하게 자녀의 친권자가 되어 동거,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제837조) 고는 하나 부계혈통계승을 원칙으로 하는 호주제도의 존속으로 인해 호적상 여성이 받는 불이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자녀의 부가(父家) 입적과 혼인한 여성의 부가(夫家) 원칙으로 인해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어야만 하고, 어머니의 호적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변화순, 1996).

우리 나라에서는 이혼가족 아동에 대한 양육비지급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므로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양육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객관적인 양육비 지급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비

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이 양육비를 선지급하여 아동의 복지가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빈곤층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보호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다 많은 편부모가족들이 양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제도, 취업모를 위한 탁아 수당제도, 장애자나 노인이 있는 이혼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편부모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정문자 · 김은영, 1999).

이혼 후의 제도적 대책

법적, 경제적 지원제도의 설치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에서 야기되는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격려해주는 심리적 지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혼으로 인한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혼여성 자조집단(self-support group)과 편부모의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이정덕 등, 1998). 유명한 이혼법학자 Arther Deerard는 "이혼은 분명히 善(선)은 아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구제이다. 그러므로 이혼은 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혼은 반드시 필요한 구제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유영주, 1998).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의를 주는 과정이다(최연실, 1999). 심리적 적응 및 성장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혼을 정신적 결함이나 인격적 장애의 표시로 간주하는 사회적 편견, 혹은 자기비하적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방향전환의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재혼이 이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자들에게는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혼-재혼의 경우 비교적 나이가 들고 정서적으로도 초혼 때보다 성숙하여 적응력이 높다. 초혼의 경우처럼 현재의 배우자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으려 하며, 초혼에서 얻은 교훈으로 인한 재혼의 만족감은 초혼에 비해 더 클 수도 있을 것이다(이정덕 등, 1998).

이혼의 실태

이혼율 증가

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구 1,000명에 대한 조혼인율(粗婚姻率, crude marriage rate), 인구 1,000명에 대한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혼인수에 대한 이혼수의 비율인 이혼율(離婚率, divorces per 100 marriages) 등이 있다. 최근 20년 동안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이혼의 비율이 1980년 5.8%에서 1998년에는 32.1%로 약 6배 증가하였다(<표 2 >참조). 1980년대 초에 비하여 1990년대 초는 약 2배 정도의 이혼율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약 8년 사이에 다시 3배의 증가추세를 보여서 이혼율의 증가속도가 최근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이혼율 증가추세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면, 1996년, 1997년, 1998년은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 2.9%, 3.6%, 9.0%증가하여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아마도 1998년도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구제금융으로 인한 대량실직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불안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본다.

이혼율에 대한 국가별 비교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이혼율이 높았으며 반면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이혼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20년에 1,274,000건의 결혼에 대해 171,000건의 이혼이 성립되어 결혼과 이혼건수의 비가 7.45 : 1이었으나, 1978년에는 약 2,200,000건의 결혼에 1,122,000건의 이혼이 성립되어 결혼과 이혼의 비율이 1.96 : 1이 되었다. 결혼하는 남녀의 약 반이 이혼으로 끝났다(한남제, 1991).

이혼율 증가의 원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여년 동안 우

표 2. 이혼율: 연도별(1980, 1985, 1990-1998) 이혼건수 및 백분율

연도	혼인수	조혼인율[1]	이혼수	조이혼율[2]	결혼에 대한 이혼율비[3]
1980	401,354	10.5	23,150	0.6	5.8
1985	375,253	9.2	38,838	0.9	10.3
1990	407,203	9.4	46,146	1.1	11.3
1991	409,986	9.4	18,474	1.1	11.8
1992	416,606	9.5	53,542	1.3	12.9
1993	388,708	8.7	58,409	1.4	15.0
1994	384,255	8.5	63,281	1.5	16.5
1995	399,057	8.8	66,060	1.5	16.6
1996	383,797	8.4	74,991	1.7	19.5
1997	361,701	8.0	83,578	2.0	23.1
1998	306,853	7.8	98,531	2.6	32.1

주: [1] $\frac{\text{혼인수}}{\text{해당년도인구}} \times 1,000$ [2] $\frac{\text{이혼수}}{\text{해당년도인구}} \times 1,000$

[3] $\frac{\text{이혼수}}{\text{혼인수}} \times 100$

[4] 혼인 및 이혼건수는 추정치임

자료출처: 통계청(1989, 1999); 김영옥 · 주재선(1999).

리나라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원인에 대하여 이영숙, 박경란 그리고 전귀연(1999)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표 3. 조이혼율의 국가간 비교(%)

국가	미국	구소련	덴마크	네덜란드
기준년도	1986	1987	1988	1987
조이혼율	4.89	3.36	2.87	1.89

국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타이	대만
기준년도	1988	1990	1989	1986	1989
조이혼율	1.26	1.13	1.08	0.69	1.26

자료출처: 김정옥 등(2000).

여성의 가치관 변화: 전통사회에서는 여필종부(女必從夫)를 미덕으로 삼았으나, 현대에는 여성의 권리가 존중되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고 생각되거나 정당한 이혼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을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도덕관 종교관의 변화: 유교나 카톨릭적 의식에서 벗어나 이혼을 고통이나 죄악이 아닌, 새로운 생활의 재출발로 인식하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전통사회에서는 경제적 위협 때문에 불행한 결혼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으나 현대사회는 여성의 교육과 취업기회가 늘어나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 능력은 이혼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요소가 되었다.

이혼의 법제적 요인의 변화: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 자(子)의 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과거에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한 법조항들이 개정, 신설되어 과거보다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자녀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 자녀수가 적으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할 때 부담이 적어진다. 그리고 자녀로 인해 자신이 희생되거나 자신의 삶이 구속당하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 증가하여, 자녀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이혼 후 자녀를 훌륭히 양육함과 동시에 자신도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사고방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의 태도변화: 백년해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을 인생의 실패로 여겼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불행한 결혼을 지속하기보다는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점차 약화되고 이혼을 수용하는 태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표 4. 성별 이혼연령 백분율과 평균이혼연령(1980, 1985, 1990-1998), 여자/남자

연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이혼연령
1980	1.2/0.1	45.6/22.4	38.6/49.5	1.9/20.5	2.3/ 5.5	0.4/1.9	-/-
1985	0.9/0.1	47.9/25.7	37.3/47.2	11.2/20.3	2.2/ 4.7	0.5/2.0	32.6/36.7
1990	0.4/0.1	38.9/19.4	45.1/50.5	12.3/22.3	2.8/ 5.7	0.5/2.0	33.0/37.0
1991	0.4/0.0	35.4/17.1	48.3/51.8	12.4/22.8	2.9/ 6.2	0.6/2.0	33.3/37.4
1992	0.4/0.0	33.4/15.9	49.3/51.8	13.1/23.5	3.1/ 6.7	0.6/2.0	33.7/37.7
1993	0.3/0.0	30.7/14.3	50.5/51.5	14.6/24.9	3.2/ 7.3	0.6/2.0	34.1/38.1
1994	0.3/0.0	29.6/13.9	50.8/51.2	15.4/25.3	3.3/ 7.5	0.6/2.0	34.4/38.3
1995	0.3/0.0	28.3/13.7	49.9/49.0	17.2/27.4	3.6/ 7.9	0.6/2.0	34.8/38.6
1996	0.3/0.0	27.6/13.2	49.1/48.1	18.7/28.5	3.6/ 8.0	0.7/2.1	35.1/38.9
1997	0.2/0.0	25.8/12.3	48.5/46.1	20.6/30.4	4.2/ 8.9	0.8/2.3	35.6/39.4
1998	0.2/0.0	22.8/10.8	47.4/43.8	23.5/32.4	5.2/10.2	1.0/2.7	36.5/40.1

자료출처: 통계청(1989, 1994, 1999); 김영옥 · 주재선(1999).

표 5. 이혼자의 평균동거연수와 동거기간별 백분율(1985-1998)

연 도	평균 동거년수(년)	0-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미만	15-20미만	20년 이상
1985	7.1	41.5	30.6	15.7	7.4	4.7
1986	7.4	41.0	31.1	15.9	7.5	4.5
1974	7.5	40.2	31.3	16.0	7.9	4.6
1988	7.4	39.4	30.8	17.4	7.8	4.6
1989	7.5	38.9	30.3	18.0	8.0	4.8
1990	7.7	38.0	28.9	19.0	8.4	5.7
1991	8.0	36.8	27.7	20.0	9.3	6.2
1992	8.3	35.4	26.6	21.2	10.1	6.6
1993	8.6	34.1	25.4	21.7	11.2	7.3
1994	8.8	33.2	25.0	21.8	12.3	7.6
1995	9.1	32.0	24.8	20.6	13.9	8.7
1996	9.3	31.7	24.5	19.8	14.6	9.5
1997	9.6	30.4	24.2	19.8	15.1	10.5
1998	10.1	28.5	22.9	19.3	16.1	13.2

자료출처: 통계청(1994, 1999); 김영옥 · 주재선(1999).

남녀의 성역할 변화: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녀를 출산,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자아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취업여성들은 가사분담 및 자녀양육에서 동등함을 주장하게 되었고,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의 남편의 역할에 익숙한 남편들은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은 새로운 남성을 만날 기회를 증대시켜 불행한 결혼을 영위하는 경우, 과거보다 쉽게 이혼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혼연령의 상승과 동거기간의 증가

<표 4>에 나타난 이혼을 하는 나이의 분포를 보면, 1980년 남자의 경우 30대가 거의 절반(49.5%)이었고, 다음으로 20대(22.4%), 40대(20.5%)의 순으로 50대 이상은 7.4%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 와서는 40대가 32.4%, 50대 이상이 12.9%로 대폭 증가한 반면에 20대는 10.8%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혼연령의 상승 현상은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혼연령의 평균도 1985년의 남녀 각각 36.7세 32.6세에서 1998년에는 40.1세와 36.5세로 약 3년씩 높아졌다.

결혼 후 이혼하기까지의 동거기간도 증가 추세에 있다. 1985년의 평균 동거기간이 7.1년이었는데 1998년에는 10.1년으로 3년 증가하였다(<표 5> 참고).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5년에는 결혼기간 10년 미만인 이혼이 72.1%이었으나 1998년에는 51.4%로 감소하였고 10년 이상인 이혼이 48.6%를 차지하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서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13.2%로 13년 전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논쟁 이슈였던 70대 할머니의 "황혼이혼"에서 보았듯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노년층을 포함하여 전 연령층으로 이혼의 문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혼인형태(초혼 · 재혼)의 변화

혼인의 형태를 구분하는 방식의 한 가지로 초혼과 재혼의 개념이 있다. 초혼과 재혼을 남녀 각각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혼인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초혼, 남자는 초혼 여자는 재혼, 남자는 재혼 여자는 초혼, 남녀 모두 재혼. 재혼은 이혼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결혼 형태이기 때문에 재혼의 가능성과 실태는 이혼율과 직결되는 관계가 있다.

남자들은 이혼한 후 약 2.3년 지나서 재혼을 하며 여자는 이혼에서 재혼까지의 기간이 약 1.6년 인 것으로 나타나서 여자들이 남자 보다 0.7년 정도 빨리

표 6. 성별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의 평균연령 (세, 1987-1998)

연도	평균초혼연령		평균이혼연령		평균재혼연령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1987	24.5	27.3	32.1	36.2	34.4	39.3
1988	24.7	27.6	32.3	36.5	34.5	39.2
1989	24.8	27.8	32.6	36.7	34.5	39.2
1990	24.9	27.9	33.0	37.0	34.8	39.5
1991	24.9	28.0	33.3	37.4	34.9	39.4
1992	25.0	28.1	33.7	37.7	35.2	39.8
1993	25.1	28.2	34.1	38.1	35.5	40.2
1994	25.2	28.3	34.4	38.3	35.9	10.4
1995	25.4	28.5	34.8	38.6	36.4	41.2
1996	25.6	28.6	35.1	38.9	36.5	41.2
1997	25.8	28.7	35.6	39.4	36.9	41.6
1998	26.2	29.0	36.5	40.1	37.4	42.2

주: 미혼비율로부터 계산되었음.
자료출처: 통계청(1996, 1999); 김영옥 · 주재선(1999).

재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6>참조). 초혼과 재혼으로 구성되는 혼인형태의 변화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남녀 모두 초혼인 혼인은 1970년에 91.5%이었는데 28년이 지난 1998년에는 4.7%가 감소한 86.8%로 나타났고 재혼남자와 초혼인 여자의 결혼도 같은 기간 동안 4.1%에서 2.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초혼남자와 재혼여자의 경우는 0.9%에서 3.4%로 약 4배의 증가하였고, 남녀 모두가 재혼인 쌍도 3.5%에서 6.9%로 2배정도 늘어났다. 남자가 초혼이고 여자는 재혼인 경우, 초혼에 남자가 여자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나은 자녀를 친자식처럼 키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한국가정법률사무소, 2000). 이러한 여자들의 재혼율의 증가는 1990년대에 들어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재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혼생활의 갈등을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것같이 생각되지만, 재혼의 성공률이 초혼의 경우보다 낮다는 연구들이 제시되었

표 7.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1970-1998), 단위 : %

연도	초혼-초혼 (남) (여)	재혼-초혼 (남) (여)	초혼-재혼 (남) (여)	재혼-재혼 (남) (여)	계
1970	91.5	4.1	0.9	3.5	100.0
1975	92.6	3.6	0.8	3.0	100.0
1980	92.2	3.5	1.2	3.1	100.0
1985	90.6	3.7	1.7	4.0	100.0
1990	89.0	3.6	2.6	4.8	100.0
1995	87.5	3.3	3.4	5.8	100.0
1998	86.8	2.9	3.4	6.9	100.0

주: 인구동태통계연보는 신고에 의해 작성됨으로써 각 연도의 통계수치가 해마다 변경되고 있다. 이는 사건 발생 연도를 지나 신고되는 지연신고들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통계는 지연신고 및 미신고 등을 감안해서 활용해야 한다.

자료출처: 김영옥 · 주재선(1999).

표 8. 이혼사유별 백분율(1980, 1985, 1990-1998)

연도	부부불화	가족간불화	건강상	경제문제	기타	계
1980	74.5	5.3	3.3	3.6	13.3	100.0
1985	80.7	4.2	1.6	3.0	10.5	100.0
1990	81.7	3.5	1.5	2.0	11.3	100.0
1991	82.5	3.4	1.2	1.9	11.0	100.0
1992	83.1	3.0	1.2	2.1	10.6	100.0
1993	82.2	2.9	1.1	2.4	11.4	100.0
1994	80.9	2.8	1.0	2.9	12.4	100.0
1995	82.2	2.9	0.9	3.2	10.8	100.0
1996	81.5	2.9	1.0	3.7	10.9	100.0
1997	80.5	2.9	1.0	4.4	11.2	100.0
1998	78.2	3.0	0.9	6.9	11.0	100.0

자료출처: 통계청(1989, 1994, 1999); 김영옥 · 주재선(1999).

다. 이것은 재혼의 경우 다시 이혼할 확률이 초혼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혼이 유지되는 평균기간도 초혼의 유지기간보다 훨씬 짧다. 이것은 재혼이 초혼보다 더 복잡한 친인척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므로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이다. 재혼부부는 자신들의 관계의 갈등보다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계부모 역할의 모호함, 계모에 대한 우리 문화의 지배적인 이미지로 인한 부정적 편견과 신화적인 역할 기대라는 이율배반성, 그리고 계부의 소외감과 경제적 부담 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재혼가족의 자녀들 역시 계부모나 의붓 형제자매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혼한 집단만을 평가할 때 그들의 결혼생활이 초혼보다 재혼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통하여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재혼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므로 재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들이 행복한 가

표 9. 성별 이혼사유의 사례수(%)

이혼사유	여성	남성	합계
6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818 (40.0)	226 (47.6)	1044 (41.4)
3호: 배우자와 존비속의 부당한 대우	556 (27.2)	24 (5.1)	580 (23.0)
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447 (21.9)	83 (17.5)	530 (21.0)
2호: 악의의 일방적 유기	205 (10.2)	132 (27.8)	337 (13.4)
4호: 존비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	12 (0.6)	5 (1.1)	17 (0.7)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	6 (0.3)	5 (1.1)	11 (0.4)
합계	2044(100.0)	475(100.0)	2519(100.0)

자료출처: 대구가정법률상담소(1999).

표 10. 6호 사유의 성별 사례수(%)

6호 사유	여성	남성	합계
경제 갈등, 빚	312 (22.3)	39 (11.0)	351 (20.0)
성격 차이	163 (11.6)	90 (25.3)	253 (14.4)
폭력, 폭언	209 (14.9)	8 (2.2)	217 (12.4)
알코올중독, 주벽	100 (7.1)	10 (2.8)	110 (6.3)
의처증	104 (7.4)	0 (0.0)	104 (5.9)
도박	73 (5.2)	17 (4.8)	90 (5.1)
무시, 불시	70 (5.0)	11 (3.1)	81 (4.6)
불성실	64 (4.6)	9 (2.5)	73 (4.2)
대화 단절, 애정 상실	55 (3.9)	5 (1.4)	60 (3.4)
거짓말, 기망	34 (2.4)	23 (6.5)	57 (3.2)
생활양식 차이	35 (2.5)	15 (4.2)	50 (2.8)
정신병	34 (2.4)	15 (4.2)	49 (2.8)
장기가출, 별거	21 (1.5)	25 (7.0)	46 (2.6)
고부갈등, 시형제-자매 갈등	26 (1.9)	17 (4.8)	43 (2.4)
성적 갈등	20 (1.4)	9 (2.0)	29 (1.7)
외도	20 (1.4)	0 (0.0)	20 (1.1)
사치, 낭비	4 (0.3)	13 (3.6)	17 (1.0)
기타1	31 (2.3)	23 (6.5)	54 (3.1)
기타2	26 (1.9)	27 (7.6)	53 (3.0)
합계	1401(100.0)	356(100.0)	1757(100.0)

기타 1 : 복역중, 불임, 신앙불일치, 질병, 친정갈등, 의부증

자료출처: 대구가정법률상담소(1999).

정을 새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이정덕 등, 1998).

이혼사유

부부간의 불화가 가장 큰 이혼사유이다. 부부간 불화는 1980년의 조사 이후 오늘까지 거의 8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그 비율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족간의 불화와 건강상의 문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문제가 1998년에 6.9%로 높은 것은 구제금융의 탓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표 8> 참조).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를 성별로 비교한 자료 <표 9>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이혼이유는 비구체적인 사유인 6호의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남녀 각각 47.6%와 40.0%이었다. 다음으로 여자는 "배우자와 존비적 유기"가 27.8%,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17.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혼사유에 있어서 남편속의 부당한 대우"가 27.2%,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21.9%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는 "악의의 일방과 아내의 입장 차이를 볼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남녀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이유가 되는 6호의 이유는 <표 10>에서 다시 세분하였다. 경제적 갈등과 빚이 가장 많은 이유는 구제금융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남편들은 성격차이(25.3%)를 중요한 사유로 든 반면에 부인들은 남편의 폭력과 폭언(14.9%) 그리고 성격차이(11.6%)라고 하였다.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분석한 <표 11>에 의하면, 부정행위는 45%전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악의의 유기는 22%에서 1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되는 경우가 5.9%에서 19.0%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11.7%에서 5,0%로 1/2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가 존

표 11. 재판상 이혼의 사유의 연도별 사례수(%)

연도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합계
1983	7259(47.7)	3352(22.0)	898(5.9)	1782(11.7)	1147(7.5)	798(5.2)	15236(100.0)
1987	9250(47.3)	4384(22.4)	2389(12.2)	1078(5.5)	1279(6.6)	1175(6.0)	19555(100.0)
1991	9517(43.9)	3785(17.4)	3683(16.8)	1175(5.4)	1454(6.7)	2129(9.8)	21743(100.0)
1994	10801(44.9)	4181(17.4)	4562(19.0)	628(5.0)	871(7.1)	547(6.6)	24590(100.0)

자료출처: 법원행정처(1983, 1987, 1991, 1994).

표 12. 이혼의 교육수준별 백분율

연도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외국유학
1980	6.3	25.7	31.9	28.8	6.8	0.4	0.1
1985	4.7	17.6	30.0	36.4	11.0	0.3	-
1990	3.3	14.3	29.8	38.6	13.5	0.6	0.05
1994	2.6	11.0	27.2	42.5	15.4	1.2	0.1

자료출처: 법원행정처(1981 - 1994).

표 13. 이혼상담 내담자의 종교별 및 성별 사례수(%)

종교	여성	남성	합계/전국종교분포백분율*
불교	510 (32.2)	94 (24.7)	604 (30.8)/ (23.1)
기독교	210 (13.3)	42 (11.1)	252 (12.8)/ (19.6)
천주교	115 (7.3)	29 (7.6)	144 (7.3)/ (6.6)
기타	12 (0.8)	1 (0.3)	13 (0.7)/ (1.5)
없음	736 (46.5)	214 (56.3)	950 (48.4)/ (49.2)
합계	1583(100.0)	380(100.0)	1963(100.0)/(100.0)

* 1995년 기준이며 통계청의 홈페이지 자료에 근거하였음.

비속과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의 가족생활이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한 것을 간접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겠고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이혼당사자의 자신의 인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과거보다 용이해졌고 강해진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이혼에 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태도 변화 그리고 가족형태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수준과 이혼율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표 12>에 제시하였는데, 이혼율을 교육수준별로 해석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0년 전인 1980년에는 이혼자의 학력이 중학교가 가장 많았고(31.9%),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28.8%)과 중학교 졸업(25.7%)의 순서이었다. 그러나 1994년에는 고졸이 가장 많아서 42.5%를 차지하였고 중졸이 27.2%로 그 다음 순서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혼자도 16.6%로 1980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전제한 학력의 전반적인 향상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이혼이 주로 낮은 학력층에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과거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된다.

종교와 이혼율

<표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교생활이 이혼율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혼자의 종교분포를 나타낸 이 자료는 대구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산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종교생활 분포(1995년)가 기독교 19.6%인데 비하여 이혼자는 12.8% 이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이혼율을 보였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 인구가 23.1%인데 비해 30.8%의 이혼율을 보였고, 천주교에서도 각각 6.6%와 7.3%를 보여서 각 종교인의 비율에 비하여 이혼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차이와 연도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를 이혼과 종교생활과 직접 연계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종교와 이혼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혼사유 및 이혼과정에서 특정 종교의 신념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업별 이혼비율

1980년의 남성 이혼청구인의 직업은 상업(15.7%), 농어업(14.2%), 회사원(13.0%), 노무자(12.0%), 종업원(10.0%), 자유업(8.2%), 무직(14.2%)의 순이었고, 여성 이혼청구인의 경우, 무직(가정주부: 49.2), 상업(12.2%),

농어업(9.3%), 종업원(8.7%), 노무자(4.9%), 자유업(4.9%), 회사원(4.3%)의 순이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비율은 아주 낮았다. 1994년의 자료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상업(17.7%), 무직(17.5%), 노무자(15.0%), 회사원(14.2%), 자유업(10.6%), 종업원(9.2%)의 순서이었다. 여성의 경우 무직(36.8%), 상업(15.7%), 종업원(12.5%), 자유업(8.1%), 농어업(6.5%), 노무자(5.8%)의 순이었다. 이 자료에는 작업상의 지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기는 어렵다. 1981년 서울 시내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는 중류층에서 이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한 남자의 이혼 당시 직업별 분포를 보면, 은행원, 회사원이 가장 많고(25%), 그 다음이 자영업(15%), 공무원(10.0%), 군인, 경찰관(8.75%), 교직(7.5%), 전문직(6.25%)의 순이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교직이 가장 많고(27.18%), 그 다음이 은행원, 회사원(14.81%), 상업(11.11%), 의사, 약사(7.4%), 공무원(6.17%)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추출 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한남제, 1999).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녀문제가 74.6%로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이 사회적 인식(13.3%)으로 나타났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피해를 염려하여 정당한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못하는 원인은 봉건적인 가치관인 가족주의에 기인한다(한남제, 1997).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서구보다 한국의 이혼율이 낮은 이유는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이혼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혼을 실패 혹은 결함으로 보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반면, 서구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이 수용되고 있으며, 개인생활이 타인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 풍조가 있으므로 사회적 편견이 이혼을 제지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서구의 이혼율이 한국보다 높다. 자녀문제와 사회적 인식은 비단 폭력뿐 아니라 다른 정당한 이혼사유가 있어도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로 일반화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14.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

	응답자수(명)	백분율(%)
자녀문제	144	74.6
사회적 인식	26	13.5
경제적 무능력	11	5.7
남편에 대한 애정, 미련	4	2.1
남편의 필요성	1	0.5
기타	6	3.1
합계	192	100.0

자료출처 : 상담통계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1999). 대구가정법률상담소

상담실에 비친 이혼: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앞에서 제시한 이혼에 대한 실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과정을 거친 사례들이거나 최소한 가정법률상담소와 여성을 위한 전화 등에 노출된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혼의 실상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입장과 권리를 밝힌 사례들도 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이런 경우의 이혼은 남성우위의 한국의 관습에 의해 끝나는 이혼으로서 여자에게 불리한 경우들이다. 대구가정법률상담소에서 어려운 입장의 여성들과 직접 상담하는 김희진씨와의 면담(2000. 9. 29)에서 여자에게 불리한 이혼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분할청구권,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 우리나라의 이혼관련법이 제도상으로는 남녀가 평등해 보이지만, 실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적지 않은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아 권리를 찾겠다는 관념이 부족하여 이혼 당시의 배우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만으로 선뜻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업주부들은 직장여성보다 권리관념이 부족하여 이혼에 따르는 구체적, 현실적 문제들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이혼조건을 수락한다든지, 남편의 일방적인 강요에 못 이겨 이혼에 합의하게 된다든지, 배우자의 구타에 시달려 이혼이 성사된 것 자체로도 만족한다든지, 심지어 권리를 찾겠다는 생각을 치사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혼관련법은 물론, 합의된 조항에 대해 각서를 받거나 공증을 의뢰하는 일 등의 극히 상식적인 절차를 모르는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설사 불평등한 이혼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해도, 긴 소송기간과 소송비용의 부담감,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전 배우자와의 상면, 의욕상실 등의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을 했을 때에도 남녀 불평등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업주부인 경우 가사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해도 대부분 재산의 30% 정도가 할당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비로 미성년 자녀에 한해 자녀당 평균 20-30만원을 받게 된다. 정작 자녀에게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는 대학교를 입학한 후부터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이혼관련법이 제도상 남녀가 평등해 보일지라도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이혼의 정의와 법률적 용어를 정리하였다. 이혼제도와 실상에 대하여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시대에 관하여 요약하였다. 근대 이전의 이혼은 칠거의 관습에 의하여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일관되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삼불거가 있었지만 그 실효는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여자에게 불리한 유교적 가치관과 관행은 우리나라의 가족법에도 반영되었다. 이후 1990년에 개정된 이혼에 관한 법률에는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어 남녀 평등사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아직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후의 주거문제,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그리고 이혼 후 재혼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 등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법률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아직 현실적인 거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최근에 들어 32.1%에 달하여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을 하는 계층도 과거와는 달리 높은 학력층과 고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에서 이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계층으로 이혼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사회에서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들이 여권신장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 사회의 변화라는 대세에 따른 것임으로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기가 쉬운 일 같지는 않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이혼이 점차 평범한 결혼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지면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혼에 관한 법률적 제도(1990. 1. 13 개정, 1991. 1. 시행)는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 등의 신설로 법률개정 이전에 비하여 여성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현행 이혼제도의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하지만 재산의 명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그리고 세제상의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자는 아직 그 권리를 제대로 다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을 할 때 자녀양육은 대체로 어머니 쪽에서 맡게 되지만 살아야 할 집은 남편의 소유로 된 사례가 허다하며 이런 경우, 이혼한 여자는 기본생활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양육권과 면접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부계혈통계승에 근거한 호주제도는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무능한 여성의 자녀 양육비 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한 당사자들이 보다 안정된 모습으로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의 가치관과 관습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이혼을 할 때 양당사자들의 권리를 최소한 때로는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힘든 과정을 겪게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법률이 집행되는 과정이 보다 공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임무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면서도 이혼에 관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이혼제도 자체와 그 제도가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왜 이혼 당사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혼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꺼리는 이면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혼이 자식의 죽음 다음으로 힘든 생활사건(life event, 홍강의 · 정도언, 1982)이며 미국에서는 배우자의 사망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평정되는(Holmes & Rahe, 1967) 힘겨운 생활사건이다. 그러나 이혼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부부의 갈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겪게되는 이혼 당사자와 자녀 그리고 당사자의 부모 등의 심리적 상태와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더 안정된 삶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혼이 보편화되거나 권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혼은 자제되거나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유영주 등, 1998)도 있을 수 있으나 이혼은 역시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의를 주는 과정(최연실, 1999)이다. 더욱이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게 되는 괴로움과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김현정, 2000; Avernevoli, Sessa, & Steinberg, 1999; Hetherington, 1999)는 이혼이 만들어 내는 부수적인 사회문제로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혼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혼율의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겠는가? 이혼한 당사자와 자녀들이 겪게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대답의 일부는 심리학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고를 쓰게 된 동기는 여성심리학회의 이혼에 관한 학술발표회에서 '이혼의 제도와 실태'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집필자에게 주어진 발표의 범위가 기존의 이혼제도와 통계자료의 기술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혼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심리학(community psychology)의 관점에서 보는 이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학과 같은 전통적인 심리학은 이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인데 비해, 지역공동체심리학의 접근은 문제를 미리 예방(prevention)하는 데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Caplan, 1964; Heller et al., 1984; Heller, 1990). 예방적 접근은 당사자가 문제를 아예 경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효율적이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노력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해결방법이다. 이러한 예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social change)를 미리 예견하여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발생하더라도 덜 심각하도록 미리 대비하는 대처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Duffy & Wong, 2000).

이혼에 대한 전통적인 심리학적 접근은 당사자의 이혼 후의 심리적 재적응과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의 새로운 적응을 돕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공동체 심리학의 접근은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과 방법을 프로그램화하여 교육하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결혼생활에 대한 예비지식과 결혼 후에 부딪칠 수 있는 부부 또는 가족간의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될 것이다. 또한 별거 또는 이혼 직전의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2000, http://org.catholic.or.kr/fm/kor. htm)에서 운영하는 가정 프로그램[2]은 이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입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가정법원(2000). URL: http://www.lawok.net/ehglbrss 5-6idj. htm.

고정명(1995). 한국가족법. 서울: 교문사.

김두헌(196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영옥 · 주재선(1999).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옥 · 박경규 · 구향숙 · 한동희 · 류도희 · 전형미 · 이현혜 · 이은경 · 정복희 · 김성희 · 장보임 · 엄인숙(2000).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서울: 학지사.

김주수 · 이희배(1981). 가족관계학. 서울: 진명문화사.

김현정(2000). 자식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발달정신병리적 접근에서 본 이혼에 따른 자녀의 적응문제. 2000년도 추계 여성심리학회 학술발표회: 이혼. 한국심리학회 산하 여성심리학회.

대구가정법률상담소(1999). 상담통계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대구: 가정법률상담소.

법원행정처(1983, 1987, 1991, 1994). 사법연감.

법제처(1989).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엄영진(1998). 사례중심 가족법. 서울: 대왕사.

유영주(1985).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유영주 · 김경신 · 김순옥(1998).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이경희(1997). 요해 가족법. 서울: 법원사.

이광규(1977). 한국 가족의 사적 연구. 서울: 일지사.

이근식(1985).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가족법 개정의 제문제 논집, 한국여성유권자연맹, 67-72.

이영숙 · 박경란 · 전귀연(1999). 가족문제론. 서울: 학지사.

이정덕 · 김경신 · 문혜숙 · 송현애 · 김일명(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이옥임 · 이옥주(1988).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이화숙(1990).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여성연구, 8(1). 149-180.

장병인(1999).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서울: 일지사.

정광현(1967). 한국 가족법 연구. 서울대학교 학술총서 8.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문자 · 김은영(1999). 이혼가족 이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탐색.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3. 108-119.

조선일보(1999. 7. 1). <여성삶 통계발표> "참고는 못 살아" 50대 이후 '황혼이혼'도 늘어.

조선일보(1999. 7. 19). 7순 할머니 수십억대 '황혼이혼'소송 승소.

조선일보(1999. 8. 25). 70대 할머니 '황혼이혼' 항소심 승소.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2000). URL: http://org.catholic.or.kr/fm/kor.htm

최연실역(1999).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하우출판사. 웨슬리 비어 외 지음

통계청(1979, 1989, 1994, 1996, 1999). 인구동태통계연보.

2) 가정 프로그램에는 혼인과 교리와 약혼자 주말 두 가지 과정이 있다. 혼인교리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남편 또는 아내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종교적 가르침을 주로 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① 혼인을 위한 준비, ② 혼인성사, ③ 의사소통과 배우자의 사랑, ④ 성, 출산능력과 자연가족계획 이외에 종교와 관련된 강좌 2개가 더 있다. 그리고 약혼자 주말이란 결혼을 앞둔 남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제 한 사람과 두 쌍의 봉사부부가 함께 참가하여 2박3일의 주말을 보내는 과정이다. 봉사부부는 결혼한지 1~6년 된 젊은 한 쌍의 부부와 충분한 결혼생활을 해온 선배부부로 구성된다. 진행은 교대로 체험을 발표하고 설문지를 쓰고 대화하는 순서가 되풀이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결혼생활을 종교의 교리와 연결시킨 것들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0). 통계로 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43년. 가정상담9(205). 서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법제연구원(1994).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한남제(1991). 미국의 가족제도.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한남제(1999). 현대 가족의 이해. 서울: 일지사.

홍강의 · 정도언(1982). 사회재적응평가척도제작: 방법론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1, 123-136.

Avenevoli, P. R., & Keith, B.(1991). Family structure, parenting practice, and adolescent adjustment: An ecological examination.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65-9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aplan, G.(1964). *Principles of preventive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Duffy, K. G. & Wong, F. Y.(2000). Community psychology(2nd Ed.). Needham Heights, CA: Allyn and Bacon.

Heller, K., Price, R. H., Reinharz, S., Riger, S., & Wandersman, A.(1984). *Psychology and community change.* Homewood, IL: Dorsey.

Hetherington, E. M.(1999). Should we stay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65-9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0. Vol. 5 No. 2. pp. 59-83

Legal System and Current Situation of Divorce

Jonghan Yi · Yoonhee Lee

Taegu University

The divorce rate of 1998 in Korean society was increased up to 32.1%. This sharp increasing suggests us to think of divorce a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issues.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system and situation of divorce during the Unified Shilla, Korea and Chosun Dynasty and the Japanese Ruling period. Current regal system for divorce which was revised at 1990 was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version. The current legal system had adopted the right to meet his or her children and the right to recover his or her property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 of wome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divorce. Although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the women still suffer lots of difficulties as well as various unfair results in the process of divorce. In general, conservative social attitude and notion on divorce has been changed toward liberalism: for example, the remarriage rate of women has been increased steadily. The needs and possibilities of psychological studies on divorce were discussed in terms of not only readjustment but also prevention for the divorced people.